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



성 북 구  
(문화체육과)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

의안 번호	37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4년 11월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체육진흥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을 신설(제14조제2항제2호)

- 1)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「경륜·경정법 시행령」 제22조에 따른 수입금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기금의 재원확보가 시급
- 2) 체육진흥기금의 재원확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,  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기획예산과와 세외수입 전출금 사항 협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결과

- 기 간 : 2024. 9. 19. ~ 10. 10. (21일간)
- 방 법 : 성북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3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아동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체육진흥기금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4조(체육진흥기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<u>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</u>」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</p> <p>3.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이므로 성북구 세출의 순증가,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오는 개정사항이 아님

### 4. 작성자

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최원국